

8. 법인세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 제1998-86호 1998. 6. 11

주 요 내 용

- 가. 법인이 1999년 12월 31일까지 구조조정을 위하여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 내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법인 또는 개인이 구조조정을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함.
- 나. 수취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자의 범위에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추가함.
- 다. 은행등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감독기관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동 기준을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대상 기관의 범위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

여업자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체조합을 추가하되 건설공체조합의 경우에는 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관할세무서장이 추후 확인하도록 함.

라.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 손비로 인정되는 공익성기부금의 범위에 범죄 예방자원봉사위원 지역협의회 및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호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추가함.

마.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증권투자신탁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접대비 손비인정한도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 금액의 범위를 각각 유가증권 매각 대금의 30퍼센트와 수익증권매각 대금의 20퍼센트에서 유가증권매각 대금의 15퍼센트와 수익증권 매각대금의 10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주택회보